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2020. 8.

산 립 청
(산불방지과)

1. 개정이유

산림항공기의 지원 요청을 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을 규정하고, 무인 비행장치(드론)를 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을 하는 경우 「항공안전법」 제131조의2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를 받기 위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무인비행장치를 재해·재난 등에 긴급하게 운항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위해 안전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45조 신설)

- 무인비행장치를 재해·재난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 「항공안전법」 제13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함
- 안전관리방안은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13조의2제2항에 따른 필요한 기본사항을 포함하도록 함
-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제43조(산림항공기 지원 요청)에 따른 지원요청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
- 안전관리방안, 비행절차 등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를 제46조로 하고,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(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) ① 산림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제42조 각 호의 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항공안전법」 제13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에는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13조의2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지원요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④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방안, 비행절차 등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5조(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)</u> ① <u>산림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제42조 각 호의 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항공안전법」 제13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에는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313조의2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③ <u>제43조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지원요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</u> ④ <u>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방안, 비행절차 등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.</u>
<u>제45조(규제의 재검토)</u> (생 략)	<u>제46조(규제의 재검토)</u> (현행과 같음)